#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상희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1266

발의연월일: 2020. 7. 1.

발 의 자:김상희·권인숙·최혜영

조오섭 · 이용빈 · 이탄희

전혜숙・박 정・박성준

이낙연 · 강준현 · 인재근

강득구 의원(13인)

#### 제안이유

보호대상아동의 발생부터 보호 종료까지 보호조치의 전 과정에 대한 지자체의 역할과 책임을 명확히 하고 그에 따른 절차를 구체화하기 위해 아동복지법에서 지자체의 의무사항으로 규정한 업무 수행을지원하는 민간 인력을 배치할 수 있도록 하여 전반적인 아동보호 절차를 지자체에서 책임 있게 수행하도록 하고, 아동의 시설 입·퇴소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를 거치도록 하며, 아동복지심의위 산하에 이를전문적·효율적으로 심의할 수 있는 사례결정위원회를 두어 아동의원가정과의 분리 및 가정복귀 시 아동의 최선의 이익을 고려할 수 있는 절차를 도입하고자 함.

또한, 아동복지 관련 자료 또는 정보의 효율적 처리 및 통합관리를 위해 아동통합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하도록 하고 아동복지시설의 시설장 및 종사자의 취업 결격사유를 규정함.

아울러, 아동복지업무 종사자 등이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 나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지 않도록 하고 비밀유지 의무 위반 시 처벌을 강화함.

#### 주요내용

- 가. 아동복지심의위원회의 심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심의위원회 산하에 사례결정위원회를 설치함(안 제12조제1항).
- 나. 보호대상아동 발생 시 아동보호업무 중 전문성이 요구되는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민간전문인력을 배치할 수 있도록 함(안 제13조).
- 다. 지자체장 이외의 자가 보호대상아동을 발견 시 시·도지사 및 시 장·군수·구청장에게 보호조치를 의뢰하도록 규정함(안 제15조).
- 라. 보건복지부장관은 아동복지 관련 자료 또는 정보의 효율적 처리 및 통합관리를 위하여 아동통합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하도록 함 (안 제15조의2).
- 마. 학대행위자가 피해아동의 퇴소조치 이후 재학대 예방을 위한 방문 상담·교육 등을 거부·방해 시, 가정복귀 취소가 가능하도록 규정 함(안 제16조).
- 바. 아동통합정보시스템상 학대 정보를 입양기관 또한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취업제한명령 대상에 입양기관 등을 포함함(안 제28조의2및 제29조의3).
- 사. 정신질환이 있거나 알코올・약물 등에 중독된 사람은 아동복지시

설의 시설장 및 종사자로 취업을 제한하도록 결격사유를 규정함(안 제54조의2).

아. 아동복지업무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자는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직무상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여서는 아니 되도록 하고 위반 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안 제65조 및 제71조).

###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아동복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의2제2항제9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업무"로 하고, 같은 호 각 목을 삭제한다.

제1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제2호부터 제7호까지의 사항에 관한 심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심의위원회 산하에 사례결정위원회를 둔다.

제13조의 제목 "(아동복지전담공무원)"을 "(아동복지전담공무원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을 제5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5항(종전의 제4항) 중 "전담공무원"을 "전담공무원 또는 전문인력"으로 한다.

④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은 전담공무원의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민간전문인력(이하 "전문인력"이라 한다)을 둘 수 있다.

제14조제2항 중 "전담공무원"을 "전담공무원, 전문인력"으로 한다.

제15조제1항제1호 중 "전담공무원"을 "전담공무원, 전문인력"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부터 제10항까지를 각각 제3항부터 제11항까지로 하

- 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3항(종전의 제2항) 후단 중 "제5호"를 "제6호"로 하며, 같은 조 제4항(종전의 제3항) 중 "보호대상아동의 개별"을 "보호대상아동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개별"로 하고,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②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 이외의 자가 보호대상아동을 발견하거나 보호자의 의뢰를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보호조치를 의뢰하여야 한다.
  - 1. 제1항에 따른 보호조치 계획
  - 2. 아동 및 보호자에 대한 지원 계획
- 3. 그 밖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15조의2를 다음과 같이 한다.
- 제15조의2(아동통합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아동복지 관련 자료 또는 정보의 효율적 처리 및 통합관리를 위하여 「사회보장기본법」 제37조제2항에 따라 설치된 사회보장정보시스템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스템을 연계·활용하여 아동통합정보시스템(이하 "아동정보시스템"이라 한다)을 구축·운영하여야 한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아동정보시스템을 구축 운영하는 데 필요한 정보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를 수집·관리·보유할 수 있으며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관계 기관 및 단체의 장 등에게 필요한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 1. 제3조제10호에 따른 아동복지시설에 관한 정보
- 2. 제15조, 제16조 및 제16조의2에 따른 보호대상아동의 보호조치, 퇴소조치, 사후관리에 관한 정보
- 3. 제28조의2에 따른 아동학대정보
- 4. 제37조에 따른 취약계층 아동에 대한 통합서비스지원에 관한 정보
- 5. 제38조부터 제44조까지의 자립지원에 관한 정보
- 6. 제44조의2에 따른 다함께돌봄센터의 정보
- 7. 제45조 및 제46조에 따른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정보
- 8. 제48조 및 제49조에 따른 가정위탁지원센터의 정보
- 9. 「입양특례법」에 따른 입양아동에 관한 정보
- 10.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사회보장급여 중 아동 관련 정보
- 11. 「주민등록법」에 따른 주민등록 자료 또는 정보
- 12.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족관계등록 자료 또는 정보
- 1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아동복지 관련 업무 수행에 필요한 정보
-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아동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의 전 과정에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 ④ 보건복지부장관은 아동의 효과적인 보호와 지원을 위하여 제2항 각 호의 정보를 처리하는 민간단체 및 기관과 필요한 정보연계를 위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정보연계 목적의 범위 내에서 해 당 단체와 기관은 연계된 정보를 이용할 수 있다.
- ⑤ 보건복지부장관은 아동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에 관한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 ⑥ 그 밖에 아동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 령령으로 정한다.

제16조제3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보호대상아동이 복귀하는 가정에 거주하는 아동학대행위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담·교육·심리적 치료 등에 참여하지 아니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⑤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3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제28조제1항에 따라 아동학대의 재발이 의심되는 경우에는 사례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보호대상아동의 가정 복귀 결정을 취소할 수 있다. 이 경우 아동학대 재발의 위험이 현저하여 긴급히 취소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사례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하고취소하고 사후에 보고할 수 있다.

제16조의2 중 "공무원으로"를 "공무원 및 전문인력으로"로 한다.

제18조제1항 중 "그 밖에"를 "그 밖에 소재불명 등"으로 한다.

제20조제1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2항 전단 중 "법원은"을 "법원은 제19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후견인의 선임청구를 받은 경우"로, "제1항에 따라 후견인"을 "후견인"으로 한다.

법률 제17206호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 제22조제7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28조의2에 따른 국가아동학대정보시스템"을 "아동정보시스템"으로 한다.

제28조의2의 제목 "(국가아동학대정보시스템)"을 "(아동학대정보의 관리 및 제공)"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을 삭제하며, 같은 조 제2항 전단 중 "피해아동"을 "아동학대 관련 정보를 공유하고 아동학대를 예방하기 위하여 피해아동"으로, "제1항에 따른 국가아동학대정보시스템"을 "아동정보시스템"으로 하고, 같은 항 후단을 삭제하며,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국가아동학대정보시스템"을 "아동정보시스템"으로 하고, 같은 항 제6호를 제7호로 하며, 같은 항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4항 본문 중 "국가아동학대정보시스템"을 "아동정보시스템"을 "아동정보시스템"으로 하며, 같은 조 제6항을 삭제한다.

6. 「입양특례법」 제20조에 따른 입양기관의 장

법률 제17206호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 제29조의3제1항제1호 중 "보장원"을 "보장원, 지방자치단체(전담공무원, 전문인력 아동학대전담 공무원으로 한정한다)"로 하고, 같은 항에 제2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5. 「입양특례법」 제20조에 따른 입양기관 제29조의4제1항제3호 중 "제23호"를 "제23호·제25호"로 한다. 제5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4조의2(결격사유)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아동복지시설의 시설장으로 채용될 수 없다.

- 1. 「사회복지사업법」 제35조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
- 2.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호의 정신질환자
- 3.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마약류에 중독된 자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아동복지시설의 종사
  자로 채용될 수 없다.
- 1. 「사회복지사업법」 제35조의2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
- 2.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호의 정신질환자
- 3.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마약류에 중독된 자제65조 중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를 "누설하거나 직무상 목적 외의용도로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로 한다.

제71조제2항을 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3항(종전의 제2항)제2호의2 및 제6호를 각각 삭제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

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1. 제28조의2제5항을 위반하여 피해아동관련 정보를 요청 목적 외로 사용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제공 또는 누설한 사람
- 2. 제65조를 위반하여 비밀을 누설한 사람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0조의2, 제15조의2, 제28조의2(같은 조 제3항제6호 및 제7호는 제외한다)의 개정규정 및 부칙 제2조는 공포 후 2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결격사유에 관한 적용례) 제54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당시 채용되어 있는 사람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입양특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를 삭제한다.

제7조제3항 중 "제6조에 따른 정보시스템"을 "「아동복지법」 제15 조의2에 따른 아동통합정보시스템"으로 한다.

#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0조의2(아동권리보장원의 설	제10조의2(아동권리보장원의 설
립 및 운영) ① (생 략)	립 및 운영) ① (현행과 같음)
② 보장원은 다음 각 호의 업	②
무를 수행한다.	,
1. ~ 8. (생 략)	1. ~ 8. (현행과 같음)
9. 「입양특례법」에 따른 국내	9
입양 활성화 및 입양 사후관	
리를 위한 <u>다음 각 호의 업무</u>	<u>업무</u>
<u>가. 입양아동·가족정보 및</u>	<u>&lt;삭 제&gt;</u>
친가족 찾기에 필요한 통	
합데이터베이스 운영	
나. 입양아동의 데이터베이스	<u>&lt;삭 제&gt;</u>
구축 및 연계	
다. 국내외 입양정책 및 서비	<u>&lt;삭 제&gt;</u>
<u>스에 관한 조사·연구</u>	
라. 입양 관련 국제협력 업무	<u>&lt;삭 제&gt;</u>
10. ~ 13. (생 략)	10. ~ 13. (현행과 같음)
③ ~ ⑧ (생 략)	③ ~ ⑧ (현행과 같음)
제12조(아동복지심의위원회) ①	제12조(아동복지심의위원회) ① -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	
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다음 각 호의 사	
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그 소속	
으로 아동복지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각각 둔다. <후단 신설>

1. ~ 7. (생략)

② • ③ (생 략)

~ ③ (생 략)

<신 설>

④ 관계 행정기관, 아동복지시 설 및 아동복지단체(아동의 권 리를 보장하고 복지증진을 목 적으로 설립된 기관 및 단체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설치・운 영하는 자는 전담공무원이 협 조를 요청하는 경우 정당한 사 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 다.

	<u>o</u>	경역	구 제	2호-	부터	제7호	호 호
<u>까</u> フ	지의	사항	에 곤	난한	심의	업무	쿤
를	효율	적으로	로 수	행ㅎ	<u></u> ] -	위하여	卢
대통	통령령	형으로	정칭	하는	바에	따	<u>카</u>
심의	의위원	]회·	산하	에	사례	결정위	위
원호	회를 .	 둔다 <u>.</u>					

- 1. ~ 7. (현행과 같음)
- ② ③ (현행과 같음)

제13조(아동복지전담공무원) ① 제13조(아동복지전담공무원 등)

- ① ~ ③ (현행과 같음)
- ④ 시·도지사, 시장·군수·구 청장은 전담공무원의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령 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민간전 문인력(이하 "전문인력"이라 한 다)을 둘 수 있다.

<u>(2)</u>		
	- <u>전담공무원</u>	또는
<u>전문인력</u>		

제14조(아동위원) ① (생 략) 제14조(아동위원) ① (현행과 같 음) ② 아동위원은 그 관할 구역의 (2) -----아동에 대하여 항상 그 생활상 태 및 가정환경을 상세히 파악 하고 아동복지에 필요한 원조 와 지도를 행하며 전담공무원 -----전담공무원, 및 관계 행정기관과 협력하여 전문인력-----야 하다. ③ ~ ⑤ (생 략) ③ ~ ⑤ (현행과 같음) 제15조(보호조치) ① 시・도지사 제15조(보호조치) ①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그 관할 구역에서 보호대상아동을 발견하거나 보호자의 의뢰를 받은 때에는 아동의 최상의 이 익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 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보호조치를 하여야 하다. 1. 전담공무원 또는 아동위원에 1. 전담공무원, 전문인력-----게 보호대상아동 또는 그 보 호자에 대한 상담 · 지도를 수 행하게 하는 것 2. ~ 6. (생 략) 2. ~ 6. (현행과 같음) <신 설> ②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

수・구청장 이외의 자가 보호

②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 수・구청장은 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보호조치가 적합하지 아니한 보호대상아동에 대하여 제1항제3호부터 제6호까지의 보호조치를 할 수 있다. 이 경 우 제1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 의 보호조치를 하기 전에 보호 대상아동에 대한 상담, 건강검 진, 심리검사 및 가정환경에 대 한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③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 수 ·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보 호조치를 하려는 경우 보호대 상아동의 개별 보호 · 관리 계 획을 세워 보호하여야 하며, 그 계획을 수립할 때 해당 보호대 상아동의 보호자를 참여시킬 수 있다.

<신 설>

네이어이를 보신에게의 포로자
의 의뢰를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시・도지사 또는 시장・
군수・구청장에게 보호조치를
의뢰하여야 한다.
<u>③</u>
<u> মা6ই</u>
<u>4</u>
<u>보호대상아</u>
동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
이 포함된 개별
<u>.</u>
1. 제1항에 따른 보호조치 계획

대사이도으 바겨웠거나 ㅂㅎ차

<신 설>

<신 설>

④ ~ ⑩ (생 략)

제15조의2(사회보장정보시스템의 제15조의2(아동통합정보시스템의 이용) 시·도지사 또는 시장· 본법 : 제37조제2항에 따라 설 치된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이 용하여 제15조에 따른 보호대 상아동에 대한 상담, 건강검진, 심리검사, 가정환경에 대한 조 사 및 개별 보호 · 관리 계획 등 보호조치에 필요한 정보를 관리하여야 한다.

- 2. 아동 및 보호자에 대한 지원 계획
- 3. 그 밖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 ⑤ ~ ① (현행 제4항부터 제1 0항까지와 같음)

구축·운영) ① 보건복지부장 군수・구청장은 「사회보장기 | 관은 아동복지 관련 자료 또는 정보의 효율적 처리 및 통합관 리를 위하여 「사회보장기본 법」 제37조제2항에 따라 설치 된 사회보장정보시스템 및 대 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스템을 연계·활용하여 아동통합정보 시스템(이하 "아동정보시스템" 이라 한다)을 구축・운영하여 야 하다.

>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아동정보 시스템을 구축 운영하는 데 필 요한 정보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를 수집 · 관리 · 보유할 수 있으며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 체의 장, 관계 기관 및 단체의 장 등에게 필요한 정보의 제공

- 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 청을 받은 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 1. 제3조제10호에 따른 아동복 지시설에 관한 정보
- 2. 제15조, 제16조 및 제16조의
   2에 따른 보호대상아동의 보호조치, 퇴소조치, 사후관리에 관한 정보
- 3. 제28조의2에 따른 아동학대 정보
- 4. 제37조에 따른 취약계층 아

   동에 대한 통합서비스지원에

   관한 정보
- 5. 제38조부터 제44조까지의 자 립지원에 관한 정보
- 6. 제44조의2에 따른 다함께돌 <u>봄센터의 정보</u>
- 7. 제45조 및 제46조에 따른 아 동보호전문기관의 정보
- 8. 제48조 및 제49조에 따른 가 정위탁지원센터의 정보
- 9. 「입양특례법」에 따른 입양 아동에 관한 정보
- 10.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

 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사회보

 장급여 중 아동 관련 정보

- 11. 「주민등록법」에 따른 주민등록 자료 또는 정보
- 12.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족관계등록 자료 또는 정보
- 1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아동복지 관련 업무 수행에 필요한 정보
-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아동정보 시스템의 구축·운영의 전 과 정에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하 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 ④ 보건복지부장관은 아동의 효과적인 보호와 지원을 위하여 제2항 각 호의 정보를 처리하는 민간단체 및 기관과 필요한 정보연계를 위한 조치를 할수 있다. 이 경우 정보연계 목적의 범위 내에서 해당 단체와기관은 연계된 정보를 이용할수 있다.
- ⑤ 보건복지부장관은 아동정보

제16조(보호대상아동의 퇴소조치 저 등) ①・② (생 략)

③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가정 복귀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아동복지시설의 장의 의견을 들은 후 보호조치의 종료 또는 퇴소조치가 보호대상아동의 복리에 반하지 아니한다고 인정되면 해당 보호대상아동을 가정으로 복귀시킬 수 있다. <단서 신설>

④ (생 략) <신 설>

	<u>시스템의 구축·운영에 관한</u>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문기관에 위탁할
	<u>수 있다.</u>
	⑥ 그 밖에 아동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
	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쉐	16조(보호대상아동의 퇴소조치
	등) ①・② (현행과 같음)
	③
	<u>다만, 보</u>
	호대상아동이 복귀하는 가정에
	거주하는 아동학대행위자가 대
	통령령으로 정하는 상담・교육
	•심리적 치료 등에 참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
	한다.
	④ (현행과 같음)
	⑤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

제16조의2(보호대상아동의 사후 전 관리) 시·도지사 또는 시장· 군수·구청장은 전담공무원 등 관계 <u>공무원으로</u> 하여금 보호 조치의 종료로 가정으로 복귀 한 보호대상아동의 가정을 방 문하여 해당 아동의 복지 증진 을 위하여 필요한 지도·관리 를 제공하게 하여야 한다.

제18조(친권상실 선고의 청구 등) 지 ① 시·도지사, 시장·군수·구 청장 또는 검사는 아동의 친권 자가 그 친권을 남용하거나 현 저한 비행이나 아동학대, 그 밖

수·구청장은 제3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제28조제1항에 따라 아동학대의 재발이 의심되는 경우에는 사례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보호대상아동의 가정 복귀 결정을 취소할 수 있다. 이 경우 아동학대 재발의 위험이 현저하여 긴급히 취소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사례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취소하고 사후에 보고할 수 있다.

세16조의2(보호대상아동의	사후
관리)	
공무원 및 전문인력으	<u>로</u>
제18조(친권상실 선고의 청·	구 등)
①	
	1 밝

에 친권을 행사할 수 없는 중 대한 사유가 있는 것을 발견한 경우 아동의 복지를 위하여 필 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법원 에 친권행사의 제한 또는 친권 상실의 선고를 청구하여야 한 다.

#### ② ~ ⑤ (생 략)

제20조(아동의 후견인 선임) ① 저 법원은 제19조제1항 및 제2항 에 따른 청구에 따라 후견인을 선임하거나 변경할 경우 「민법」 제932조 및 제935조에도 불구하고 해당 아동의 후견에 적합한 사람을 후견인으로 선임할 수 있다.

② 법원은 후견인이 없는 아동에 대하여 제1항에 따라 후견 인을 선임하기 전까지 시·도 지사, 시장·군수·구청장, 제4 5조에 따른 아동보호전문기관 (이하 "아동보호전문기관"이라 한다)의 장, 가정위탁지원센터 의 장 및 보장원의 장으로 하 여금 임시로 그 아동의 후견인 역할을 하게 할 수 있다. 이 경

에 소재불명	<u> 등</u>	
$\bigcirc$ ~ $\bigcirc$ ( $\bigcirc$	현행과 같음)	
제20조(아동의	후견인	선임)
<u>&lt;</u> 삭 제>		

② 법원은 제19조제1항 및 제2
항에 따라 후견인의 선임청구
<u>를</u> 받은 경우
<u>후견인</u>

우 해당 아동의 의견을 존중하 여야 한다.

법률 제17206호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

제22조(아동학대의 예방과 방지 의무) ① ~ ⑥ (생 략)

⑦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 수 · 구청장, 보장원의 장 또는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28조의2에 따른 국가아동학 대정보시스템의 아동학대 관련 정보 또는 자료를 활용할 수 있다.

1. ~ 3. (생 략)

템)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아동 및 제공) <삭 제> 학대 관련 정보를 공유하고 아 동학대를 예방하기 위하여 대 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아동학대정보시스템을 구 축 · 운영하여야 한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피해아동,

-					
-					
-					
	법률	제17	206호	아동복	지법
		일.	부개정	법률	
제2	22조(여	아동호	학대의	예방고	<b>방</b> 지
	의무)	1 ~	<u>6</u>	(현행과	같음)
(	7				
-					
-					
-					
-					· <u>0}</u>
-	동정보	L시스	<u>템</u>		
-					
-					

1. ~ 3. (현행과 같음) 제28조의2(국가아동학대정보시스 | 제28조의2(아동학대정보의 관리

② ----아동학대 그 가족 및 아동학대행위자에 관련 정보를 공유하고 아동학대 관한 정보와 아동학대예방사업에 관한 정보를 제1항에 따른 국가아동학대정보시스템에 입력·관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보건복지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보장원, 아동보호전문기관 등에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아동의 보호 및 아동학대 발생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국가아동학대정보 시스템상의 피해아동, 그 가족 및 아동학대행위자에 관한 정보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목적과 필요한 정보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기재하여야 한다.

1. ~ 5. (생 략) <신 설>

## 6. (생략)

④ 보건복지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요청이 있는 경우 국가아

를 예방하기 위하여 피해아동
<u>아동정보시스</u>
<u>템</u>
<u>&lt;후단 삭제&gt;</u>
③
<u>아동정보시스템</u> -
<u>.</u>
1. ~ 5. (현행과 같음)
6. 「입양특례법」 제20조에 따
른 입양기관의 장
<u>7.</u> (현행 제6호와 같음)
4
<u>아동정</u>

동학대정보시스템상의 해당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다만, 피해아동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정보의 제공을 제한할 수 있다.

- ⑤ (생략)
- ⑥ 보건복지부장관은 「사회보 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 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29 조에 따른 한국사회보장정보원 에 제1항에 따른 국가아동학대 정보시스템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법률 제17206호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

제29조의3(아동관련기관의 취업 제 제한 등) ① 법원은 아동학대 관련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 를 선고하는 경우에는 판결(약 식명령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로 그 형 또는 치료감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집행이 유예·면제된 날(벌금형을 선고받은 경우에는 그 형이 확정된 날을 말한다)

<u>보시스템</u>
,
<u>.</u>
⑤ (현행과 같음)
<삭 제>
법률 제17206호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
제29조의3(아동관런기관의 취업
제하 두) ①

부터 일정기간(이하 "취업제한 기간"이라 한다) 동안 다음 각 호에 따른 시설 또는 기관(이 하 "아동관련기관"이라 한다)을 운영하거나 아동관련기관에 취 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할 수 없도록 하는 명령(이하 "취 업제한명령"이라 한다)을 아동 학대관련범죄 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선고(약식명령의 경우 에는 고지를 말한다)하여야 한 다. 다만, 재범의 위험성이 현 저히 낮은 경우나 그 밖에 취 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 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 다.

1. 보장원, 제37조에 따른 취약 계층 아동 통합서비스 수행기 관, 아동보호전문기관, 제44조 의2에 따른 다함께돌봄센터, 제48조에 따른 가정위탁지원 센터 및 제52조의 아동복지시설

1. 보장원, 지방자치단체(전담
공무원, 전문인력 아동학대전
담공무원으로 한정한다)

2. ~ 24. (생 략) <u><신 설></u>

#### ② ~ ⑦ (생 략)

- 제29조의4(취업제한명령을 선고 받은 자에 대한 취업 등의 점 검・확인) ①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은 아동학대관련범죄로 취업제 한명령을 선고받은 자가 제29 조의3제1항을 위반하여 다음 각 호의 아동관련기관을 운영 하거나 아동관련기관에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하고 있는지를 직접 또는 관계 기관 조회 등의 방법으로 연 1회 이 상 점검・확인하여야 한다.
  - 1. 2. (생략)
  - 3. 보건복지부장관: 제29조의3 제1항제1호·제7호·제9호· 제10호·제11호·<u>제23호</u>에 따 른 아동관련기관

4. ~ 6. (생략)

②・③ (생 략)

<신 설>

2. 21. (e o ) e p /
25. 「입양특례법」 제20조에
따른 입양기관
② ~ ⑦ (현행과 같음)
제29조의4(취업제한명령을 선고
받은 자에 대한 취업 등의 점
검·확인) ①
<u>.</u>
1.•2. (현행과 같음)
3
<u>제23호·제25호</u>
4. ~ 6. (현행과 같음)
②·③ (현행과 같음)
제54조의2(결격사유)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9 ~ 94 (형해과 간은)

는 아동복지시설의 시설장으로 채용될 수 없다.

- 1. 「사회복지사업법」 제35조 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
- 2.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 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호의 정신질 환자
- 3.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 률」 제2조제1호의 마약류에 중독된 자
-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아동복지시설의 종사자로 채용될 수 없다.
- 1. 「사회복지사업법」 제35조 의2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
- 2.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 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 제3조제1호의 정신질 환자
- 3.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 률」 제2조제1호의 마약류에 중독된 자

제65조(비밀 유지의 의무) 아동복 제65조(비밀 유지의 의무) -----지사업을 포함하여 아동복지업

무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자는 그 직무상 알게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제71조(벌칙) ① (생 략) <u><신 설></u>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 2. (생략)

2의2. 제28조의2제5항을 위반하여 피해아동관련 정보를 요청목적 외로 사용하거나 다른사람에게 제공 또는 누설한

누설하거나 직무상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
<u>다</u> .
세71조(벌칙) ① (현행과 같음)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
금에 처한다.
1. 제28조의2제5항을 위반하여
피해아동관런 정보를 요청 목
적 외로 사용하거나 다른 사
람에게 제공 또는 누설한 사
<u>람</u>
2. 제65조를 위반하여 비밀을
누설한 사람
<u>③</u>
<u>.</u>
1.・2. (현행과 같음)
<삭 제>

<u>사람</u>	
2의3. ~ 5. (생 략)	2의3. ~ 5. (현행과 같음)
6. 제65조를 위반하여 비밀을	<u>&lt;삭 제&gt;</u>
<u> 누설한 자</u>	
7. (생 략)	7. (현행과 같음)